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9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황명선 · 전용기 · 강득구
이해식 · 박홍배 · 맹성규
이재관 · 박정현 · 강준현
이주희 · 부승찬 · 손명수
최혁진 · 송옥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제4항 신설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를 “제6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해당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

③ 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 ----- ----- -----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6의2. 해당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원회의원

7. 제1호부터 <u>제6호</u>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9.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7. -----<u>제6호의2</u>----- ----- ----- ----- -----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u> ④ <u>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	---